

등록번호	인상고등학교-
등록일자	2023. 11. 10.
결재일자	2023. 11. 10.
공개여부	공개

위원장	학교장
이권기	최용배

인상고등학교운영위원회 회의록

회의명	제114회 인상고등학교운영위원회						
회의일시 및 장소	2023.11.8.(수) 11:00 본교 교장실						
참석자명단	출석위원: 이권기, 박형배, 김한석, 전종재, 서동민 (6명 중 5명 참석) 출석교직원: 안연우 행정실장, 최성규 주무관						
회의진행순서	<table style="width: 100%; border: none;"> <tr> <td style="width: 33%;">1. 개회</td> <td style="width: 33%;">3. 학교장인사</td> <td style="width: 33%;">5. 안전심의</td> </tr> <tr> <td>2. 국민의례</td> <td>4. 보고사항</td> <td>6. 폐회</td> </tr> </table>	1. 개회	3. 학교장인사	5. 안전심의	2. 국민의례	4. 보고사항	6. 폐회
1. 개회	3. 학교장인사	5. 안전심의					
2. 국민의례	4. 보고사항	6. 폐회					
상정안건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2023학년도 학교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 학칙 및 학교생활규정 개정(안) 						
보고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회의록 승인 						
심의결과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2023학년도 학교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p>가. 발언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담당자(최성규) 세입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32,920,000원(9,000,000원 증), 지방교육행정기관이전수입 5,118,960,000원(613,420,000원 증), 기타이전수입 80,248,000원(2,400,000원 증), 학부모부담수입 531,408,000원(174,399,000원 증), 행정활동수입 8,470,000원(4,726,000원 증), 전년도이월금 2,364,000원 합계 5,774,370,000원 세출 인적자원운용 1,726,534,000원(6,340,000원 증), 학생복지/교육격차해소 390,323,000원(90,708,000원 증), 기본적 교육활동 84,545,000원(2,542,000원 증), 선택적 교육활동 574,160,000원(214,703,000원 증), 교육활동 지원 102,669,000원(30,237,000원 증), 학교 일반운영 236,835,000원(22,637,000원 증), 학교시설 확충 2,623,304,000원(436,778,000원 증) 합계 5,774,370,000원 - 교직원 및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예산 조정 -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교육청 목적사업비, 수익자부담 조정 증액 <p>나. 결정사항: 원안 가결(찬성 5표, 반대 0표)(의사봉 3타)</p>						



자문결과

2. 학칙 및 학교생활규정 개정(안)

가. 발언내용

- 서동민(교무부장)
- 학칙 및 학교생활규정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하여 설명

신·구조문대비표(학칙)

현 행	개 정 안
제3조 (위치) 본교는 전라북도 정읍시 신태인읍 화호리 393번지에 둔다.	제3조 (위치) 본교는 전라북도 정읍시 신태인읍 벽골제로 34에 둔다.
제29조 (학생의 징계) ④ 학교의 장은 법 18조 제 1항 본문에 따라 지도를 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29조 (학생의 징계) ④ 학교의 장은 초·중등교육법 18조 제 1항 본문에 따라 지도를 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13조 (휴업일) 3. 겨울휴가 : (12월 말부터 - 익년 2월 초순까지) 4. 학년말휴가 : (2월 중순부터 - 2월 말일까지)(개정2006.04.06) 5. 개교기념일 : (5월 12일)	제13조 (휴업일) 3. 겨울휴가 : (12월 말부터 - 익년 2월 말일까지) 4. 삭제 5. 개교기념일 : (5월 12일) 교육과정운영계획에 따름
신설	제16장 학생생활지도 제49조 (학생생활지도) 학생생활지도의 범위와 지도 방안 등에 대한 제반 사항은 『학교생활규정』에 의하여 실행한다.
부칙 제32조 신설	부칙 제32조 (시행일) 이 학칙은 202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23.11. 인상고 제 호)

신·구조문대비표(학교생활규정)

현 행	개 정 안
<p>제1장 총칙 제3조(적용 근거) 이 규정은 「교육기본법」 제12조 제1항,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 4(학생의 인권보장), 제20조 제3항(교사의 교육권), 「동법시행령」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전북 학생 인권 조례」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 2,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0조의 3에 근거한다.</p>	<p>제1장 총칙 제3조(적용 근거)</p> <p>-----</p> <p>-----</p> <p>-----</p> <p>-----</p> <p>-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 2(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0조의 3(학생생활지도)-----.</p>
<p>제1장 총칙 제5조(학교 구성원의 책무) ① 생략 ② 생략 ③ 생략 ④ 생략 신설</p>	<p>제1장 총칙 제5조(학교 구성원의 책무) ① 생략 ② 생략 ③ 생략 ④ 생략 ⑤ 학교장과 교원은 생활지도를 통해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학내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⑥ 학교장은 학생 및 보호자와 교원 간의 상호 소통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며, 교원의 원활한 생활지도를 위하여 시설, 인력 등 제반 여건을 갖추도록 지원해야 한다. ⑦ 보호자는 학교의 장과 교원의 전문적인 판단과 생활지도를 존중해야 하며, 학생이 학칙을 준수하도록 지도하여 교육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협력해야 한다.</p>
<p>제2장 제7조(차별받지 않을 권리) ① 생략 ② 생략 신설</p>	<p>제2장 제7조(차별받지 않을 권리) ① 생략 ② 생략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한 생활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은 「초·중등교육법」 제59조에 따라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이해 및 특수교육 관련 연수 실시, 통합 학급의 학생 수 감축, 특수교육교원과 통합학급 담당 교원의 협력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⑤ 학교의 장은 심각한 문제행동을 보이는 특수교육대상자의 경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개별화교육계획을 행동 중재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p>

<p>제8조(학습에 관한 권리)</p> <p>① 생략 ② 생략 신설</p>	<p>제2장 제8조(학습에 관한 권리)</p> <p>① 생략 ② 생략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업 및 진로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1. 교원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에 영향을 주는 행위 2. 학교의 면학 분위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품의 소지, 사용 3. 진로 및 진학과 관련한 사항</p>
<p>제2장 제13조(건강에 관한 권리)</p> <p>①생략 ②생략 ③생략 ④생략 신설</p>	<p>제2장 제13조(건강에 관한 권리)</p> <p>①생략 ②생략 ③생략 ④생략 ⑤ 학교의 장과 교원은 보건 및 안전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1. 자신 또는 타인의 건강에 영향을 주는 행위 2. 건전한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3. 자신 또는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행위</p>
<p>제2장 제14조 (대인 관계에서 자세)</p>	<p>제2장 제14조 (인성 및 -----)</p>
<p>제4장 학생생활교육 제32조(교사의 권한)</p> <p>1. 교육의 상담 및 조언 신설 추가 2. 생략 3. 시정 요구 신설 추가 4. 생략</p>	<p>제4장 학생생활교육 제32조(교사의 권한)</p> <p>1. 생략 가. 학교의 장과 교원,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원인 분석, 대한 모색 등이 필요한 경우 누구든지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나. 상담은 수업시간 외의 시간을 활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진로 전담 교사 또는 전문상담교사에 의한 상담, 학교의 장과 보호자 간의 상담 등은 예외로 한다. 다. 상담의 내용은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 외의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라. 학교의 장과 교원, 보호자는 상호 간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고, 상대방의 요청이 있는 경우 명백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해야 한다.</p>

마. 라에 따른 상담의 일시 및 방법 등은 학교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바. 라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장과 교원은 다음은 상담을 거부할 수 있다.

- 1) 사전에 목적, 일시, 방법 등이 합의되지 않은 상담
- 2) 직무범위를 넘어선 상담
- 3) 근무 시간 외의 상담

사.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 또는 보호자의 폭언, 협박, 폭행 등의 사유로 상담을 지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상담을 즉시 중단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과 교원은 교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주변 학생에게 신고를 요청할 수 있다.

아.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문제를 인식하거나 학생 또는 보호자가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조언할 수 있다.

자. 학생의 사생활에 관한 조언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차.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문제 개선을 위하여 전문가의 검사, 상담, 치료를 보호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2. 생략

3. 생략

가.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행동이 학교 안전 및 교내 질서 유지를 저해할 소지가 있는 경우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나. 학교의 장과 교원은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그 밖에 수업에 부적합한 물품을 사용하는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다. 학교의 장과 교원이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의 행동에 변화가 없거나, 학생의 행동으로 교육활동에 지장을 받을 경우 제4호 따른 훈육 또는 다른 훈계를 할 수 있다.

라. 학교의 장과 교원이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이를 무시하고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전에 주의를 준 학교의 장과 교원은 생활지도에 대한 책무를 다한 것으로 본다.

4. 생략

5. 학교생활교육위원회 -----

가. 학교의 장은 학생 또는 보호자가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보아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5. 학교위원회-----

신설 추가

6. 생략

7. 생략

신설 추가

	<p>나. 교원은 지속적인 생활지도에 불응하는 학생에 대하여 학교의 장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p> <p>6. 생략</p> <p>7. 생략</p> <p>8. 학생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칭찬, 상 등의 적절한 수단을 활용하여 보상</p>
<p>제4장 학생생활교육 제33조(훈계, 훈육 등의 교육적조치)</p> <p>① 생략</p> <p>② 생략</p> <p>신설 추가</p>	<p>제4장 학생생활교육 제33조(훈육, 훈계 등의 교육적조치)</p> <p>① 생략</p> <p>② 생략</p> <p>1.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제32조1호에 따른 조인 제32조3호에 따른 주의로 학생에 대한 행동 중재가 어려운 경우 훈육할 수 있음.</p> <p>2.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바람직한 행동 변화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특정한 과정한 과업을 부여하거나, 특정한 행위를 할 것을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학생의 인권을 존중해야 하며 법령과 학칙의 범위에서 지시가 이루어져야 함.</p> <p>3. 학교의 장과 교원은 법령과 학칙에 따른 금지된 행동을 하는 학생을 발견한 경우, 이를 즉시 중지하도록 말로 제지할 수 있음.</p> <p>4. 학교의 장과 교원은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 학생의 행위를 물리적으로 제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과 교원은 교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주변 학생에게 신고를 요청할 수 있음.</p> <p>5. 제7호에 따른 물리적 제지가 있는 경우, 해당 교원은 이를 학교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함.</p> <p>6.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분리 조치를 할 수 있고 세부 사항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따른 학교생활규정에 관한 특례 운영계획을 반영하여 학교생활규정 세부 지침으로 정함.</p>

7. 학교의 장은 제9호에 따른 분리를 거부하거나 1일 2회 이상 분리를 실시하였음에도 학생이 지속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며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호자에게 학생인계를 요청하여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음.

8.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을 소지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학생의 소지물품을 조사할 수 있음.

9.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교생활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을 학생으로부터 분리하여 보관할 수 있고 세부 사항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따른 학교생활규정에 관한 특례 운영계획을 반영하여 학교생활규정 세부 지침으로 정한다.

10. 교원은 제6항 제3호, 제4호 및 제9항에 따라 생활지도를 한 경우 지도의 일시 및 경위 등을 학교의 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11.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36조의 5에 따른 학급담당교원은 학생 및 학부모의 의견을 들어 학급의 생활지도에 관한 세부 사항을 법령과 학칙의 범위에서 학급생활규정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다만,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학급에서는 보호자 또는 특수교육교원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할 수 있음.

12. 학교의 장과 교원은 제32조1호에 따른 조언, 상담, 제32조 3호에 따른 주의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거나 잘못된 언행의 개선이 없는 경우 학생에 대해 훈계할 수 있음

13. 학생을 훈계할 때에는 그 사유와 바람직한 행동 개선방안을 함께 제시해야 함.

14.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을 훈계할 때에는 훈계 사유와 관련된 다음의 과제를 함께 부여할 수 있음

가. 문제 행동을 시정하기 위한 대안 행동

나. 성찰하는 글쓰기

다. 훼손된 시설, 물품에 대한

원상복구(청소를 포함한다)

<p>③ 교사가 상담 및 교육적 조치를 반복해도 학생이 행동 수정의 의지가 없다고 판단되면 학교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p>	<p>③ ----- ----- ----- 학교생활교육위원회----- -----.</p>
<p>제4장 학생생활교육 제36조(징계의 원칙)</p> <p>① 생략 ② 생략 ③ 생략 ④ 생략 ⑤ 생략 ⑥ 생략 추가</p>	<p>제4장 학생생활교육 제36조(징계의 원칙)</p> <p>① 생략 ② 생략 ③ 생략 ④ 생략 ⑤ 생략 ⑥ 생략 ⑦ 학교의 장은 학생 또는 보호자가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보아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⑧ 교원은 지속적인 생활지도에 불응하는 학생에 대하여 학교의 장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p>
<p>제40조 ① 생략 ② 생략 ③ 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학생, 또는 보호자는 3일 이내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④ 학교장은 재심 요구일로부터 5일 이내에 재심 여부를 결정하여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생략</p>	<p>제40조 ① 생략 ② 생략 ③ -----14일 -----.. ④ -----14일-----. 다만 동일한 내용으로 정당한 사유없이 반복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2회 이상 답변하고 그 이후에는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p>
<p>부칙 제4조 신설</p>	<p>부칙 제3조 이 규정은 2023.04.24.부터 시행한다.</p>

- 질의사항 없음

나. 결정사항: 원안 가결(찬성 5표, 반대 0표)(의사봉 3타)

2023년 11월 8일

기록자: 간사 안연우 